[별첨 1.]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양우내안愛」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9층 5개동 총 1,252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총 42세대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입주 예정월 : 2030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분양금액 및 납부조건 :** 미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급개요**

구분	주택형	약식 표기	주택형별 면적(㎡)					일반분양 공급세대수	기관추천 배정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면적 개요 / 공급 세대수	59.9777	59	59.9777	26.9417	86.9194	42.0560	128.9754	26	8	
	84.7415A	84A	84.7415	34.7740	119.5155	59.4203	178.9358	177	16	2
	84.8836B	84B	84.8836	33.0127	117.8963	59.5198	177.4161	123	9	2
	84.9911C	84C	84.9911	33.8153	118.8064	59.5953	178.4017	88	9	1
합계	-	-	-	-	-	-	-	**414**	**42**	**5**

■ **당첨 예정자 :** 기관에서 "확정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 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 및 유형별 세대수** (※괄호( )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구 분		59	84A	84B	84C	합계
국가유공자		1(5)	2(10)	1(5)	1(5)	5(25)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2(10)	1(5)	1(5)	5(2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5)	2(10)	1(5)	1(5)	5(25)
중소기업 근로자		1(5)	3(15)	2(10)	2(10)	8(40)
장애인	**경기도**	2(10)	3(15)	2(10)	2(10)	9(40)
	서울특별시	1(5)	2(10)	1(5)	1(5)	5(25)
	인천광역시	1(5)	2(5)	1(5)	1(5)	5(25)
합계		**8(40)**	**16(80)**	**9(45)**	**9(45)**	**42(210)**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추천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table>
<tr><th>구 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td></tr>
<tr><td>추천기관</td><td>■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tr>
<tr><td>공급기준</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분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td></tr>
</table>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광주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6.10.30.(수)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소유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Ⅲ 공급(예정)일정

구 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 11. 06 .(금)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개관일	2026. 11. 06.(금)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4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인터넷 청약	2026. 11. 16(월) 09:00~17:30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 청약신청 시(10:00~14:00)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 신청시 자격입증 서류를 모두 필수 지참)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6. 11. 24.(화)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당사 분양 홈페이지 (https:// feliztower-yangwoo.co.kr
정당계약일	2026. 12. 7.(월) ~ 2026. 12. 9.(수) (3일간, 10:00~17:00)		• 펠리스타워 양우내안애 견본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4)
유의사항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단, 특별공급 구비서류 제출은 필수사항입니다.(견본주택 별도문의)		

Ⅳ 사업지 위치도



Ⅴ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1577-3197)



※ 본 안내문의 내용 및 이미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등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에 우선합니다.)

[별첨 2.]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내역 - [기관명]

타입	번호	유형	시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59	확정	장애인	XXX	XXX	XXXXXX-XXXXXXX	XXX-XXXX-XXXX
59	확정	장애인				
59	예비	장애인				
59	예비	장애인				
84A	확정	중소기업				
84A	확정	중소기업				
84A	예비	중소기업				

※ 각 주택형별 배정세대수에 맞게 당첨대상자 명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비대상자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 예비당첨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 상기번호는 추천 순위가 아니며 예시입니다.
※ 기간 내 추천자가 없을 경우 "추천 대상 없음"을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